

부산지방법원 2016. 11. 25 선고 2016가단3567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11. 4.

판결 선고 2016. 11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추경준

별지